

금천구 홀몸어르신 맞춤형 보린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 공고

금천구는 저소득 홀몸어르신(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동체주택인 홀몸어르신 맞춤형 보린주택 잔여세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는 홀몸어르신은 신청서 제출 전에 공급개요, 신청자격 등 공고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신청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신청 서류의 반환 및 수정은 불가하므로 작성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주택이란?

입주자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활동을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에 독립된 공동체 공간을 갖추고 있고, 관리규약이 마련된 주택임

※ **공동체 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의 공유공간입니다.**

2021년 2 월 1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홀몸어르신 맞춤형 보린주택 잔여세대 개요

1. 공급 개요

(단위 : 세대)

구 분	잔여세대	잔여세대 현황
계	7	
보린주택 (1호점/독산2동)	3	202호 / 306호 / 401호
보린행복주택 (6호점/시흥1동)	4	201호 / 202호 / 301호 / 302호

2. 임대 가격

● 보린주택(1호점) : 금천구 독산로47가길 38 ※ 독산2동

층별	세대별 면적(m ²)			방개수 (실)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비고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202호	16.06 (4.9평)	8.94 (2.7평)	25.00 (7.6평)	1	10,680,000	59,600	
306호	14.55 (4.4평)	8.10 (2.5평)	22.65 (6.9평)	1	11,930,000	66,600	확장면적
401호	14.44 (4.4평)	8.04 (2.4평)	22.48 (6.8평)	1	9,700,000	54,200	

● 보린행복주택(6호점) : 금천구 독산로27길 44 ※ 시흥1동

층별	세대별 면적(m ²)			방개수 (실)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비고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201호	24.15 (7.3평)	7.25 (2.2평)	31.40 (9.5평)	1	12,780,000	166,400	
202호	27.09 (8.2평)	8.12 (2.4평)	35.21 (10.6평)	1	14,130,000	184,000	
301호	24.15 (7.3평)	7.25 (2.2평)	31.40 (9.5평)	1	12,780,000	166,400	
302호	27.09 (8.2평)	8.12 (2.5평)	35.21 (10.7평)	1	14,130,000	184,000	

-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건설한 주택임
- 이 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되면 입주 기간 내 입주를 하여야 하며, 공동체주택으로서 관리규약을 준수하고, 최종 입주자는 공동체교육을 주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 미 참여시 계약 및 재계약 거절될 수 있음)
- 입주 신청시 금천구치매안심센터에 예약 후 내방하여 치매 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함.(결과지는 구청에서일괄 받음) 【치매안심센터 ☎ 02-3281-9082】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간 층간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공용 공간, 주차장 등 포함 면적임
- 이 주택은 승강기와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승강기 및 주민공동 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동요금이 부과되며 그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주민공동시설은 홀몸어르신 주택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입주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설치한 시설로 시설 사용에 따른 수도료·전기료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각 호에 따라 면적과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상이하며 호수는 최종 입주 당첨자 간 무작위 추첨에 의해 결정됨(※입주대상자 선정 후 공개 추첨)
- 이 주택은 홀몸어르신 전용 공공주택이므로 본인 외의 다른 구성원이 함께 입주할 수 없으며, 입주 후 입주자격을 준수하지 않을 시 서울주택공사에서 입주민에게 통보 후 퇴거 조치할 수 있음(입주 후 계약과 동일 조건)
- 호실 추첨 후 호실 변경은 불가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교환도 불가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별도의 유의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청약 전에 현장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 기준임

3. 임대 기간

-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최대 20년 거주)**

※ 단, 재계약 시점에 보린주택의 입주자격의 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 충족조건임

2 입주대상자 신청자격

● 기본요건

-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1.2.1.월) 현재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공급신청 자격자**

공 급 대 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지역(금천구)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65세 이상(1956. 2. 1. 이전 출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보장 결정중인 자) ▶ 1인 가구로서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 생활(혼자거동)이 가능하고, 공동체주택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한 자 ▶ 보린주택 입주자 관리규약 준수 및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하는 자 ※ 주민등록상 별도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1인 가구로 인정하지 않음(사실 이혼 인정하지 않음)		
무주택 세대구성원 정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신청자격이 배우자가 없는 단독 세대주의 경우엔 불필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세대원」 (=세대): 아래①~⑤ 대상으로 구성(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① 주택공급신청자 ②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세대 분리된 경우도 포함) ③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④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⑤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		
구 분	내 용	비 고
•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신청이 불가능. 단,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거나, 외국인등록을 신청한 후 등록전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세대구성원에서 제외하고 공급신청가능
•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대상		

3 입주자 선정(우선 순위)

- ①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② 지하 · 반지하 무주택 거주자 ③ 금천구 전입일이 빠른 자
④ 생년월일 빠른 자(고령자)

- ※ 지하 · 반지하 거주사실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상 표기 된 경우 또는 현장확인
- ※ 전입일자는 주민등록 초본상으로 확인이 가능한 최종 금천구 전입일자만 인정하고(분구 하기 전 구로구 등 전입일자 불인정), 말소의 경우 말소 이후 재등록일을 기준으로 함
- ※ 입주자로 선정되면 개별통보 되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동주민센터로 반드시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로 인한 불이익(계약안내 등)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선정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함)

4 입주자 선정절차

모집공고 주택공개*	신청접수	실태조사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호실추첨 공동체 교육	계약 및 입주
'21.2.1.(월) ~ 2.19.(금)	'21.2.15.(월) ~ 2.19.(금)	'21.2.22.(월) ~ 4.2.(금)	'21.4.9.(금)	'21.4.16.(금) 15:00	'21.4.30.(금) ~ 5.4.(화) '21.5.20.(목) ~ 7.20.(화)
금천구, SH공사	거 주 지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금 천 구	금천구, SH공사	금천구	SH공사

- ※ 상기 일정은 입주자 선정 심의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주택공개 : 2.8.(월) ~ 2.9.(화) 14:00~15:30)
- ※ 호실 추첨 시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교육 실시 예정(4.16.금. 15:30~16:30/호실 추첨시간에 따라 변동)
- ※ (주택공개 및 입주관련)서울주택도시공사 구로금천센터 협조 (☎ 02-6340-9000~1)
- ※ 상기 일정은 입주자 선정 심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심의결과에 따라 당첨자 및 예비자로 최종 선정함(성별 균형 고려 등 선정위원회에서 입주자 최종 결정함/심의내용 비공개)

5 공급일정

1. 신청 접수 일정

- **접수일시** : 2021. 2. 15.(월) ~ 2. 19.(금) ※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신청시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2021.2.1.월)이후 발급분 제출

제출서류	세 부 내 용	발급처	부수
① 공급 신청서	• 양식은 접수장소(동 주민센터)에 비치	신청자 작성 및 제출서류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③ 무주택 서약서	• 양식은 접수장소(동 주민센터)에 비치		
④ 치매검사 결과지	• 금천구 치매안심센터에 유선 예약 후 내방하여 검사해야 함 검사결과지는 구청에서 일괄 받음 ☎ 02-3281-9082 - 검사기간 : 2021. 2. 1.(월) ~ 2. 19.(금) ※ 코로나19 상황으로 변경될 수 있음 (검사 예약은 ' 21. 2. 19.(금)까지 완료)		
⑤ 거주실태 확인서	• 거주지 동주민센터 담당 주무관 또는 조사 공무원 ※ 지하, 반지하만 해당서류 작성	공무원 작성	1부
⑥ 입주자 조사표	• 거주지 동주민센터 담당 주무관 또는 조사 공무원		
⑦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 와 주민등록표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신청자	1부
⑧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전체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 신청자 포함)	신청자	1부
⑨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신청자	1부
⑩ 신분증	•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 자녀 대리 신청시 본인 및 신청자 신분증 제출	신청자	1부

※ 신청시 제출한 서류는 계약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이관될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천통동복지콜센터(☎ 02-2627-1004), 금천구청 복지자원과(☎ 02-2627-1981)
거주지 동주민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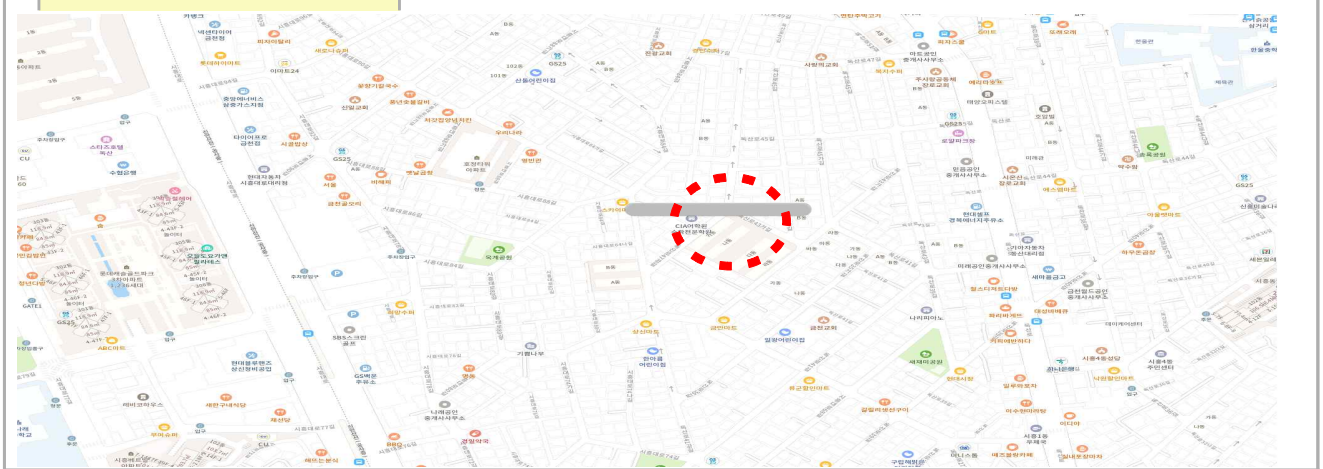
2. 주택 공개 기간

● **일 시** : 2021. 2. 8.(월) ~ 2. 9.(화) 14:00~15:30

- 현장공개 기간 외에는 주택 내부를 공개하지 않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별도의 유의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외부환경(생활여건)을 확인 후 신청해야함

● **장 소** : 보린주택(1호점) 금천구 독산로47가길 38(독산2동)

보린주택 위치도



보린주택 사진 자료



전경사진



주민공동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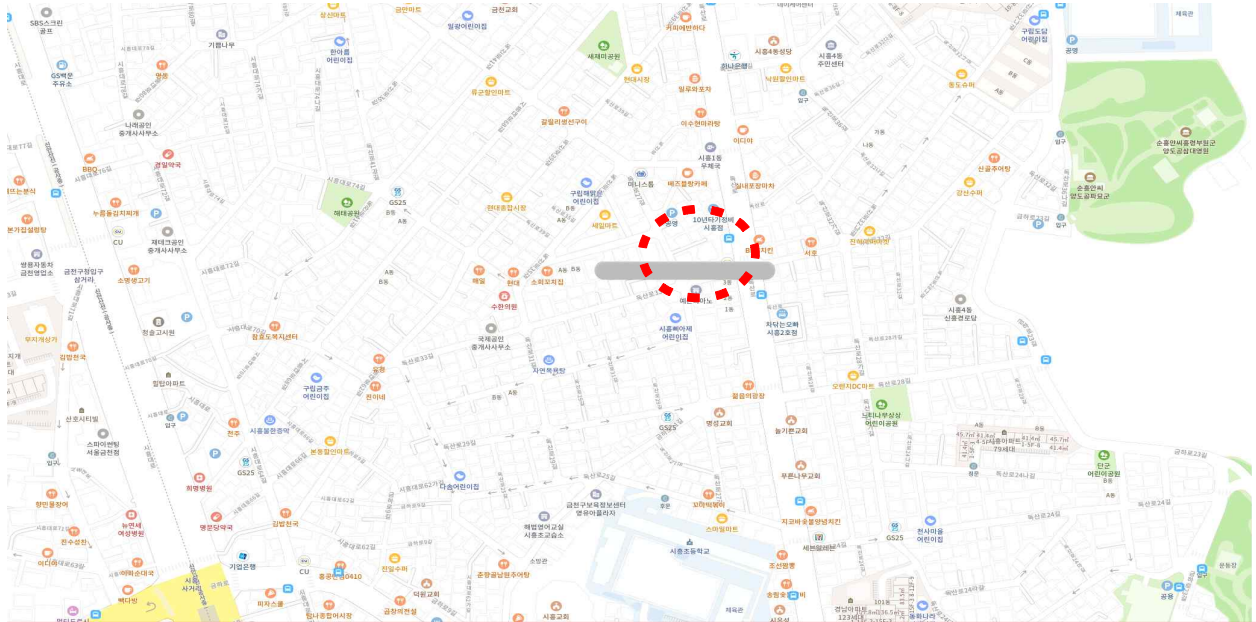
방 내부



화장실

● **장 소** : 보린행복주택(6호점) 금천구 독산로27길 44(시흥1동)

보린행복주택 위치도



보린행복주택 사진 자료



전경사진



주민공동시설



방 내부



화장실

6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1. 당첨자 발표

- **당첨자 발표** : 2021. 4. 9.(금) (*입주자 선정 심의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금천구청 홈페이지 : <http://www.geumcheon.go.kr>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 <http://www.i-sh.co.kr>
 - 당첨자의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 안내문과 계약금 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당첨자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계약 체결시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잔여 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자를 먼저 공급하고 예비자 소진 후 추가 모집할 수 있음

2. 예비자 명부 발표

- **예비자 발표** : 2021. 4. 9.(금) (* 당첨자 발표일과 동일)
 - 예비자는 당첨자 미 계약, 미 입주 및 기존세대 퇴거 등으로 잔여세대 발생 시 예비자 순번으로 공급됩니다.
 - 우리구에서는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보린주택이 현재 6호점까지 있으며, 향후 타 보린주택 잔여세대 발생 시 본인 동의 후 예비자 순번으로 통합하여 공급됩니다.
(예비자 통합관리/추가 모집만 해당/향후 추가 건립하는 보린주택 포함)
 - 이번 모집공고 예비자 효력은 발표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2022. 4. 8.(금)까지임

3. 호실 추첨 일정

- **추첨일시** : 2021. 4. 16.(금) 15:00 (* 입주자선정 심의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첨장소** : 금천구청 지하1층 평생학습관제1강의실(예정) (* 장소는 당첨자에게 문자로 개별 통보 예정)
- ※ 호실 추첨 미참여시 임의배정함**

7 계약일시 및 구비서류

- **계약일시** : 2021. 4. 30.(금) ~ 5. 4.(화) [10:00~17:00]
※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계약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형주택부(지하철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연결)
-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본인 내방시	① 신분증 ② 계약자 도장(본인 내방시 서명가능) ③ 계약금납부 영수증 ※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을 이용하여 계약금을 납부하시는 경우 계좌이체 확인증 등을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제3자 대리인 내방시	상기 "본인 내방시 구비서류" 외 -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계약시 : ① 대리인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제3자 계약시 : 위임장(신청인의 인감날인), 신청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 **입주기간** : 2021. 5. 20.(목) ~ 7. 20.(화)
※ 잔금납부 후 해당 센터와 협의하여 입주
 - 서울주택도시공사 구로금천센터(☎02-6340-9000~1)
 - 원활한 이사를 위해 각 동별(오전 1세대, 오후 1세대)로 제한함
 - 당첨자(입주대상자)는 임대차계약 전 다음의 조건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 미 이행시 당첨취소 및 계약무효(계약거절)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시 공동체주택 의무사항(공동체규약 제정 및 공동체 공간 운영, 공동체
활동 등) 알림 및 입주자 의무사항 동의서 등 각종 서류 작성**

당첨취소 및 계약무효(계약거절)되는 경우 (주요사항 예시)

- ◆ 무주택세대 구성원, 금천구 계속 거주 등 자격사항이 공고일 이후 변경되어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 ◆ 주택소유자로 검색된 자가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 계약 시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 추후 월평균소득이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의 월평균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 계약기간 내 방문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 ◆ 서류의 결격 및 미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 ◆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첨자 발표이후 부적격(착오에 의한 당첨포함)으로 판명될 경우 등

8 유 의 사 항

-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제출 전 공급현황, 공급일정 등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청약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후에는 신청내용 수정이 불가하므로, 신청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당첨 여부를 필히 확인하고, 당첨 후 입주 전까지 주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구청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통보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임대주택의 현황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주택공개 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신청접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 중 기존에 지원을 받았거나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체납, 불법, 전매 등의 사유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계약해제 및 해지된 경우에는 재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입주신청자로서 소득기준 초과,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초과, 주택소유 등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개별 안내된 소명기한까지 부적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명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 소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되고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됩니다.
- 입주신청자의 소득자료 등을 사회보장시스템에 의하여 조사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직접 소득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득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확정됩니다.

- 당첨자 발표 전·후에 주택소유, 부양 가족수, 부동산 및 차량소유, 무주택기간, 소득입증, 심사서류제출기간 내 관련서류 미제출 등 입주자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관련사실의 입증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탈락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착오에 의한 당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계약)자가 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 취소됩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최대 9회/최장 20년)
- 재계약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의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 또는 퇴거되며, 그 외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중 독립된 주거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에도 국민주택기금 미상환, 주택소유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되고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이 불가하며 기존 대출금은 입주 전까지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만65세 홀몸어르신(보린)주택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통해 무주택자 입주보증금의 90%까지 융자 지원됨으로 궁금한 사항은 금천구청 복지지원과 (☎ 02-2627-19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세대주변경 불가)로서, 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금천구에 거주하여야 함(위반 시 결격 처리)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 당첨(예정)취소 및 계약 거절의 경우 계약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금 반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소유여부 및 자산보유기준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취소 및 계약이 거절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이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명도 하여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이 주택은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이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며, 공고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계법령, 공고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문 의 처

- 신청접수 관련 문의 : 02-2627-1004(금천통통복지콜센터), 금천구청 복지자원과 ☎02-2627-1981
- 관리비 관련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구로금천센터 ☎02-6340-9005
- 계약 관련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주택부 ☎02-3410-8544,8549
- 입주 관련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구로금천센터 ☎02-6340-9000~1
- 당첨확인 : 금천구청 홈페이지 : <http://www.geumcheon.go.kr>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 <http://www.i-sh.co.kr>

※ 유선(전화) 확인은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공원룸주택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주 택 신청유형		보린주택(☐ 1호점 ☐ 6호점)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울시 금천구						
	전화번호	휴대전화() -		금천구전입일		년 월 일		
		집전화 () -		서울시전입일		년 월 일		
신청자격	☐ 무주택		☐ 총자산기준 2억원 이하		☐ 자동차 현재가치 2,468만원 이하			
	☐ 맞춤형 생계급여 ☐ 맞춤형 의료급여 ☐ 맞춤형 주거급여							
지하반지하 거주여부	☐ 지하 ☐ 반지하 (*증빙서류 제출 필요)							
보린주택 예비자 통합 관리 ☐ 동의 ☐ 미동의								
위와 같이 홀몸어르신 공공원룸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본인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 및 세대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세대주) (인)								
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								
				작 성 자				
				소속		직급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국토교통부장관, 「임대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전세임대 포함, 이하 같다.)의 임차인(임주예정자 포함, 이하 같다.)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 및 계약 관리(보증보험 가입),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 [기본 항목] 주민등록등(초)본,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의료)보험증
 - [소득 항목] 임대주택 우선공급자격정보, 청약저축정보, 주택소유정보,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 정보
 - [소득 항목] 건강보험보수월액, 국민연금소득신고액(표준보수월액),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임대소득·기타사업소득)·근로소득(상시근로자소득·일용근로자소득·자활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농업직불금, 국민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실업급여, 지방세정(재산세·취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자산 항목] 토지·건축물 대장 및 공시가액, 자동차 등록원부, 차적정보, 차량취득가액 및 차량기준가액
 - [기타 항목] 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자활, 장애인, 한부모, 본인부담경감대상)증명, 자활근로내역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임주예정자] 5년, [계약자] 영구
- 본인은 위 1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자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수탁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및 입주 이력 관리,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1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임차인 선정·계약 및 입주 정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임주예정자] 임대차계약시까지, [계약자] 임대차 계약기간
- 본인은 위 1~2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본인은 위 1~3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 받았으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본인(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포함)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본인		-				-	
		-				-	
		-				-	
		-				-	

주)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021년 월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무주택 서약서

[앞 면]

※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면은 서약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서약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본인은 주택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향후 주택소유현황에 대한 전산 검색 결과 주택소유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취소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거주실태 사실확인서

금천구 홀몸어르신 보린주택 입주신청자 _____는 _____동_____번지
(_____도 _____로 _____명 _____주 _____소 _____) _____지하/반지하/_____층에 거주하는 자임을 확인합니다.

※ 해당 유형에 표시

_____년 _____월 _____일

통 장 확 인	소속	해당 동, 통 기재		통장	성명		(인)
동주민센터확인	소속		직급		성명		(인)

※ 지하, 반지하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2부 첨부** 요망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중

보린행복주택 입주신청자 조사표 [주택상태 등]

□ 신청자 현황

- 성 명 : (남/여)
- 생년월일 : 19 년 월 일생(만 세)
- 주 소 :
- 연 락 처 :
- 주택정보 : 지하/반지하, 보증금 만원/월 만원
- 금천구전입일 : 년 월 일

□ 조사표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구체적으로 기록
주택 상태	① 지하/ 반지하/ 옥탑/ 별집/ 기타 ② 화장실 및 주방 공동사용여부 ③ 주택의 노후화 정도 1) 채광, 곰팡이가 가득함 2) 난방시설 고장 등 불량 3) 단열상태가 불량하고 도배 시급	
공동 생활	① 성격이 원만하여 공동생활에 잘 적응하고 타인에게 피해 줄 가능성이 없는가? ② 입주 후 관리규약 지키고, 공동체 프로그램 활동하는 것에 동의하는가?	
건강 상태	① 스스로 거동이 가능하여 밥을 혼자 지어 먹을 정도로 생활이 가능한가? ② 정신질환(우울증 및 약물복용)·알콜 중독,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료받고 있는가?	
가족 관계	① 알콜 중독과 폭력성이 있는 자녀 또는 가족이 있는가? ② 자녀 또는 가족과 함께 거주할 가능성이 있거나 외부인이 많이 출입할 가능성이 높은가?	

2021년 월 일

조사 공무원

성명

○ ○ ○

(인)

보린행복주택 입주 신청자 조사표 [주택상태 등]

□ 신청자 현황

- 성 명 : 이 ○ ○ (여)
- 생년월일 : 1935년 00월 00일생(만 81세)
- 주 소 :
- 연 락 처 :
- 주택정보 : 월세/보증금 1,000만원/월 10만원
- 금천구전입일 : 1995년 3월 1일

□ 조사표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구체적으로 기록
주택 상태	① 지하/ 반지하/ 옥탑/ 별집/ 기타 ② 화장실 및 주방 공동사용여부 ③ 주택의 노후화 정도 1) 채광, 곰팡이가 가득함 2) 난방시설 고장 등 불량 3) 단열상태가 불량하고 도배 시급	-1층에 거주, 월세 (1000만원/10만원) -햇빛이 잘 안 들어오며 우풍이 심해 겨울에 많이 추워 전기장판을 깔고 지내신다고 함
공동 생활	① 성격이 원만하여 공동생활에 잘 적응하고 타인에게 피해 줄 가능성이 없는가? ② 입주 후 관리규약 지키고, 공동체 프로그램 활동하는 것에 동의하는가?	-금천○○복지관에서 16년정도 다녔으며 노래, 무용등을 배우고 있으며 월, 화는 한글을 배우고 있다고 함 -건강을 위한 운동할 겸 복지관에 다니고 있다고 함
건강 상태	① 스스로 거동이 가능하여 밥을 혼자 지어 먹을 정도로 생활이 가능한가? ② 정신질환(우울증 및 약물복용)·알콜 중독,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료받고 있는가?	-당뇨, 고혈압으로 월1회 이장교내과 다니고 있으면 잘 관리하고 있음 -다리에 힘이 없어 힘들다고 하지만 거동하는데 이상 없음
가족 관계	① 알콜 중독과 폭력성이 있는 자녀 또는 가족이 있는가? ② 자녀 또는 가족과 함께 거주할 가능성이 있거나 외부인이 많이 출입할 가능성이 높은가?	- 배우자와 사별 - 자녀5명이지만 연락은 하지 않으며 자녀들도 통화하는 것을 안 좋아한다고 함.

2021년 월 일

조사 공무원

성명

○ ○ ○

(인)

※ [별 첨]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소득·자산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 분		항 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국민연금급여, 사회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일반	토지,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 지방세정 자료

자산	자산	건축물 및 주택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설치하는 사무소·공연 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임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임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자산항목 산정방법

구 분		자산 기준
총 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에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자동차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 세대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하여 산출함 (단,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과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일반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업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입주 신청자의 가구원 전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제외)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 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 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 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분양권등,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분양권 등
 - ※ 분양권등 신규계약한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
 - ※ 준공후 등기처리된 경우는 주택으로 처리됨
 - 4.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제외)
 -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7.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8.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 제외)
 - 9. 매매외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제외)